# **FOBST**

定

款

2018. 4.



# 사단법인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정관

제정 2004. 6. 29.

개정 2005. 5.19.

개정 2007. 4. 21.

개정 2008. 4.19.

개정 2010. 5. 3.

개정 2011. 6. 20.

개정 2012. 5. 9.

개정 2013. 5. 16.

개정 2014. 4. 29.

개정 2015. 11. 20.

개정 2018. 4.13.

#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이하 '과기협')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Federation of Busan Science and Technology(FOBST)이라고 부른다.

## 제2조(주소) <개정 2018. 4. 13.>

과기협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내에 둔다.

### 제3조(목적)

과기협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진흥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부산 및 동남권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개정 2015. 11. 20>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 1.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부산의 과학기술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
- 2. 과학문화 확산으로 과학붐 조성
- 3. 부산과학기술상의 발전방향 논의
- 4. 부산과학기술인 업적 알리기 사업(과학선현 재조명, 훈・포장 상신 등)

- 5.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연결
- 6. 과학기술단체 및 과학도 육성ㆍ지원사업
- 7. 과학문화확산에 필요한 교육·출판, 전시·홍보, 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8. 국립부산과학관 후원 및 부산지역 과학관 협력 사업(과학해설사, 부산지역 과학관발전협의회 등)
- 9.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지정 또는 위탁받은 사업
- 10. 기타 과기협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자격)

과기협의 회원은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부산의 연구계 교육계 산업계 기타 과학기술문화창달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원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정회원 :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계, 교육계, 산업계, 기타 과학기술문화창달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원, 부산과학기술상 수상자 및 심사위원장
- 2. 준회원 :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수여하는 부산미래과학자상 수상자 및 이에 상 응하는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 <개정 2011. 6. 20>
- 3. 특별회원 : 부산이 고향이거나 연관이 있는 인물로서 과학기술발전에 공이 큰 국내·외 인사 또는 다른 고장의 인물 중 부산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 제7조(회원의 가입)

회원은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 3. 회원은 과기협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4. 회원은 필요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규칙의 준수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잃는다.

- 1. 본인이 탈퇴한 때
-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 3. 본인이 과기협이 주재하는 회의나 관련 행사, 과학문화창달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에 연간 1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을 때. 단, 건강이나 외국연수, 안식년 등의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삭제 <개정 2005. 5. 19>

# 제 3 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개정 2015. 11. 20>

- ①과기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2. 이사 18인 이내(이사장, 사무처장 포함)
- 3. 감사 2인
- 4. 사무처장 1인
- ②제①항의 임원 중 사무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개정 2015. 11. 20>

- 1. 임원은 이공계 출신 또는 이공계 육성에 기여한 부산지역 주요 기관장과 대학 총장 및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 2. 임원은 이사회의 이사가 개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국제신문사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교육감·CTO평의회 의장·동아대학 교총장·동의대학교총장·부경대학교총장·부산대학교총장·인제대학교총장·한 국해양대학교총장·부산교육대학교총장·국립부산과학관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3.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개정 2015. 11. 20>

- 1.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사직을 승계한다.

### 제13조(임원의 해임)

- 1. 삭제 <개정 2005. 5. 19>
- 2.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임무) <개정 2015. 11. 20>

- 1.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사무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경영 전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3.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고문과 자문위원)

- 1. 과기협에는 임원 외에 자문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부산과학기술발전과 과기협의 목적과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이사 및 지역기관 단체장으로서 이사 3명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 6. 20>
- 3. 자문위원은 부산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하며 선출 방식은 2항과 같다.

# 제 4 장 총 회

### 제16조(종류와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이사회의 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정기총회는 연간 1회 개최한다.
- 4.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 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 2. 예산결산 및 감사결과의 승인
- 3. 삭제 <개정 2005. 5. 19>
- 4. 임원의 승인 <개정 2007. 4. 21>
- 5.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6. 기타 과기협의 해산 등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 제 18조(의결 방법)

- 1.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원은 대리인과 서면, 전자우편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제19조(총회 의사록)

의장은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서명날인 해 과기협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 제20조(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18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개정 2015. 11. 20>
-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구성 및 과기협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1조(이사장) <개정 2013. 5. 16>

-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사장은 지역 사회계와 학계, 언론계 대표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3. 2항의 경우 공동이사장은 상호간의 합의로 대내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제22조(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의 7일전까지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5. 5. 19>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제2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회의 의결한다.

- 1.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임원의 추천 및 신규회원의 승인 <개정 2007. 4. 21>
- 5. 기타 과기협의 중요한 사항

### 제24조(의결방법)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가부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공동이사장의 경우, 양자의 의견이 일 치하지 않을 경우 이사 전원이 재의결하며 이때도 가부동수일 경우 총회를 소집해서 결정한다.
- 3.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개정 2008. 4. 19>

# 제 6 장 기 구

### 제25조(기구)

- 1. 과기협은 원활한 운영과 지역과학육성, 과학문화확산 및 회원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최고기술경영자(CTO)평의회와 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4. 19>
- 2. 위원회는 기획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시 특별위원회와 전공별 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9>
- 3. 각 분과위원장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26조(최고기술경영자평의회의 역할)

최고기술경영자(CTO)평의회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의 정회원 중 산업계에서 직접 경영활동을 하는 최고경영자들로 구성하며 산학연 연계발전과 재정을 비롯한 협의회의 운영전반을 논의한다. <개정 2008. 4. 19>

### 제27조(위원회의 역할)

①기획운영위원회는 과기협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운영을 자문한다. <개정 2011. 6. 20>

- ②각 분과위원회 및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1. 회원심사·포상위원회 : 회원자격심사, 부산과학기술상 심의, 과학유공자 훈포장 상신, 대학생 논문상 및 청소년 과학상과 관련된 업무 등
- 2. 과학정책연구위원회 : 세미나 강연주최, 이공계육성 방안 및 지역여성과학자육성정책 추진, 지역과학기술육성 정책 마련 등
- 3. 과학문화확산위원회 : 사이언스코리아-부산 운동 추진, 부산과학축제 추진, 시민천문대 유치 및 활성화방안 모색, 각종 경연대회 및 시민과학축제 개최 등.
- 4. 산학연 발전위원회 : 정부 및 기업연구소 유치, 연구개발(R&D) 기반구축, 산학 연 공동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 등
- 5. 출판홍보위원회 : 부산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행, 국내외 홍보활동 등

### 제28조(위원회의 구성)

- 1. 회원은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1>
- 4.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 7 장 사 무 조 직

### 제29조(사무처의 설치) <개정 2015. 11. 20>

- 1. 과기협은 사무처리 및 위원회 운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의 직제, 직원의 임용, 복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0조(과학기술운영기획단의 설치)** <개정 2011. 6. 20>

- 1. 과기협은 부산지역 과학관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운영기획단을 둔다.
- 2. 과학기술 운영기획단은 과학교육 및 전시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과학기술 운영기획단의 직제 및 처우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장 재 정

#### 제31조(재원)

과기협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기부금
- 2. 회원의 회비
- 3. 외부지원금
- 4. 사업수익금 <개정 2008. 4. 19>
- 5. 용역비 등 기타 수입

## 제32조(회계)

과기협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33조(실적공개) <개정 2018. 4. 13.>

과기협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한다.

# 제 9 장 보 칙

### 제34조(정관변경과 해산)

- 1. 삭제 <개정 2005. 5. 19>
- 2. (준용기준)

본 정관에 성문이 없는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준해서 실시한다.

### 제35조(잔여재산처분) <개정 2018. 4. 13.>

과기협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부 칙

본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4. 13.>